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행복한요양원의 총 입소정원은 49명이며, 노인요양시설(개정법) 정원 34명 치매전담실 가형 1실 정원 15명이다. 입소자는 장기요양보험등급(1~5등급 중 시설급여)을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제 2 조(입소 계약)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소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를 입소 보호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규정과 급여제공 사항에 관한 내용 및 비용을 명시하여, 상호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③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입소자의 급여제공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입소자가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 입소자의 자격 변동 및 기타 변동사항에 대하여 요양원 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외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입소자가 퇴소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될 경우 선납한 본인부담금 및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퇴소일까지 정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④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에 대한 납부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음주, 흡연, 폭력, 도박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명된 경우
-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배회 또는 폭력성, 기타 질환으로 인해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가 안 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시설 생활이 어려울 때
-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및 외박 등으로 외부에서 생활할 경우

제 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비용)

행복한요양원에 입소하여 일상생활 및 심신기능의 유지를 위한 급여제공의 종류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요양시설급여제공)

- 신체수발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 간호서비스 : 기초건강관리 체크,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계약의 방문 진료
- 재활서비스 : 운동치료, 물리치료, 기능회복훈련 및 재활서비스
-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서비스
- 인지, 여가, 가족참여(프로그램) 서비스
- 영양관리 서비스 (1일 3식 제공, 2회 간식 및 특별식 등은 비급여)

②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가에 명시된 각 등급별 금액으로 하며,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은 장기요양급여수가가 변동되면 별도의 통보 및 계약서의 재작성 없이 변동된 수가를 즉시 반영한다. 장기요양급여는 급여 계약시 계약서에 비급여항목과 함께 명시한다. 월별 입소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 금액은 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납한다.

③ 입소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법정본인부담금비율의 비용으로 산출되며, 1일 제공되는 3식 및 2회 간식 등 식재료비의 비급여 비용으로 구분된다. 이외의 의료비, 건강검진비 및 약제비, 상급침실료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입소자 중 등급외자(장기요양보험이전 입소자)에 대한 입소비용은 시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비 고
공단부담금		80%	감경률에 따라 달라짐
개인부담금	본인부담금	20%	감경률에 따라 달라짐
	식재료비	9,000/1일	1일 3회 제공
	간 식	1,000원/1회	1일 2회
	상급침실료 (1인실)	11,000/일	11,000/일
	상급침실료 (2인실)	6,000/일	6,000/일

제4조(계약의 변경)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동된 경우 법정 고시가 되는 일로부터 즉시 적용되며, 수가

변동의 경우 재계약 없이도 변경 수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비급여 비용의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 적용 시점 30일 전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한 후 재계약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실)

요양원은 입소자 중 특별히 격리 조치하여야 하는 전염성 질환자,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 집중관찰이 필요한 환자 또는 임종 직전의 입소자를 일시적 격리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의료서비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협력병원, 계약 의사, 간호(조무)사 등을 배치하고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입소자의 병원진료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응급상황의 경우 보호자와의 협의 없이 요양원에서 응급상황 조치의 권한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협력병원(야간 시에는 관내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다.
-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④ 요양원 측에서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의료적 행위로 발생한 비용 및 약제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 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건강검진(감염병 검사포함)을 시행한다.
- ⑥ 계약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월 2회 입소자를 진찰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으며, 촉탁의사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진찰비용을 보호자에게 청구하여 계약 의사(또는 소속기관)에게 납부한다.

제7 조(손해배상 및 시설물이용)

이용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① 생활실은 어르신의 상태 변화 및 요양원 실정에 의하여 임의 배정 또는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및 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할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입소 중에는 시설 내에서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8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 측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직원의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영업 배상 보험 및 전문인책임배상 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처리 하도록 한다.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도난, 외출 중 불의의 사고에 의한 손해

②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③ 개인 질병의 악화나 그로 인한 사망

④ 기타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 등